



# 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(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)

1. 정책기획담당관-4968(2016.4.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.

## 가. 예비비 지출(안)

- 부 서 : 정책기획담당관
- 정책사업 : 구정현안 기획 조정 및 효율성 제고
- 단위사업 :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 운영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액	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예비비 지출요구액
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	
송무수행	배상금등	배상금등	90,000	3,359	86,641	327,972	241,331
예비비 (일반회계)	예산액		기 지출결정액		금회 지출결정액		잔액
	3,558,489		7,478		241,331		3,309,680

## 나. 지출사유

- 우리구를 당사자(피고)로 하여 제기된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(제10부) 판결문 2013가합503149 / 2013가합505015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, 서울서부지방법원(제2부) 판결문 2015나35120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고, 지급지연시 추가이자발생 및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긴급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우리구 배상금 예산(정책기획담당관) 잔액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함.

## 다. 예산부서 검토의견

- 위 건은 당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하고 판결 선고에 따라 배상금 지급에 대한 시의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방침서 및 지출요구서 각 1부. 끝.

---

주무관 **김민성** 예산팀장 **김정현** 정책기획담당관 **임근래** 부구청장 **조인동**

구청장 **04/05**  
**문석진**

협조자

시행 **정책기획담당관-5047** ( ) 접수 ( )

우 **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**

**/ http://www.sdm.go.kr**

전화 **330-1103**

**/전송 330-1442**

**/ kms73@sdm.go.kr**

**/ 대시민공개**